

2013. 3. 9.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경찰학개론(2013년 신정5판, 김재규저)
 ▶ 객 - 객관식 경찰학개론(2013년 신정5판, 김재규저)
 ▶ 토탈 - TOTAL기출문제 경찰학개론(2013년 개정판, 김재규엮음)]

1.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54·56, 객 p80, 토탈 p29)
- ① 전체사회가설은 월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해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셔먼이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하였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전체사회 가설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월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예 : 대상업소 등과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월정금을 수수하여 상사에게 전달하거나 동료간에 주고받거나 부하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
썩은 사과 가설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81·82, 토탈 p38)

- ❶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❷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 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 ❹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해설

- ①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찰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 ② 친일 김홍집내각은 1894년 6월 28일(음력)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法務衙門 管理 司法行政警察)’이라고 정하면서, 경찰을 법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1일(음력)의 ‘경무관제직장을 의정(議定)한 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 건’에서는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즉,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정하였다가 곧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 ④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 한국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1894년 제정)이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56·157, 객 p220, 토탈 p54)

- ❶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❷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제3항). 위원장은 정무직이 아니다.
- ② 동법 제7조 제1항
- ③ 동법 제7조 제3항
- ④ 동법 제6조 제4항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64·165·166, 객 p230, 토탈 p58)

-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해설

권한의 위임은 법정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기 p191, 객 p270, 토탈 p711)

-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년이다.
-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11 ② 15 ③ 16 ④ 17

해설

- ㉠ 11, ㉡ 3, ㉢ 2이므로 합하면 16이다.
-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임용일을 기준)(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 ㉠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63·64, 객 p87, 토탈 p672)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 ① 동강령 제5조 제1항
- ② 동강령 제5조 제2항
- ③ 동강령 제15조 제1항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276·277·280)

-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① 동법 제5조 제2항
- ② 동법 제6조 제1항
- ④ 동법 제8조 제2항

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284, 객 p464, 토탈 p80)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해설

-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2항).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최루탄은 분사기 등에 해당한다.

- ① 동법 제10조의4 제1항
- ②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③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기 p1007, 객 p1019, 토탈 p342)

- | |
|---------------------------|
|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해설

- ㉠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체포수배서, 수배서 중 가장 중요
청색수배서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이 주목적
녹색수배서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목적
황색수배서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사망자의 신원확인 목적
장물수배서	도난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
범죄수범수배서	새로운 범죄수범 등을 관리·배포
오렌지 수배서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스페셜 수배서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 목적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755·756, 토탈 p648)

- | |
|---|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❶ 1개 ❷ 2개 ❸ 3개 ❹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률 제11조 제5항).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률 제17조 제1항).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률 제23조 제1항).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동법률 제23조 제3항).

11.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376-377, 객 p506, 토탈 p111)

- ❶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
- ❷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 ❸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 ❹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해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
--------	--

	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u>경계선을 표시하여</u>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u>강화시킴으로써</u> 범죄에 <u>대항·예방하게</u>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 p551, 객 p650, 토탈 p750)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① ㉠㉡㉢ ② ㉠㉡㉤ ③ ㉡㉢㉣ ④ ㉢㉣㉥

해설

㉢㉣㉥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은 임시조치에 해당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동법률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629·630)

- | |
|--|
| <p>㉠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p> <p>㉡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p> <p>㉢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p> <p>㉣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 동법 제52조 제1항
 ㉢ 동법 제53조 제2항
 ㉣ 동법 제53조3 제1항

14.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489)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① 동법 제196조 제1항
 ③ 동법 제196조 제3항
 ④ 동법 제196조 제4항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기 p346, 객 p463, 토탈 p720)

㉠ 수갑	㉡ 가스분사기	㉢ 기관총	㉣ 경찰봉
㉤ 유탄발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다목적발사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이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경찰장비의 종류(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구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 <u>경찰봉</u> ·호신용경봉· <u>전자충격기</u> ·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소총· <u>기관총</u> (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 <u>유탄발사기</u> ·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최루탄 등	근접분사기· <u>가스분사기</u>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 <u>석궁</u> · <u>다목적발사기</u>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16.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기 p719, 객 p799, 토탈 p224)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② ㉠-병종사태, ㉡-갑종사태
③ ㉠-을종사태, ㉡-갑종사태 ④ ㉠-갑종사태, ㉡-병종사태

해설

[통합방위사태의 유형(통합방위법 제2조)]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을종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7.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 p635·636, 객 p726, 토탈 p739)

- | |
|--|
|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없다.

- ㉠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은 4년이다.
 ㉡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은 2년이다.
 ㉢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이다.
 ㉣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은 2년이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5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4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3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2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②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취소된 경우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취소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경우 ⑥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경우 ⑦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 ⑧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⑨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1년간 제한	① 앞에서 규정된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정지처분기간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미필자, 제2종에 응시하는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803·805·807·814, 객 p855, 토탈 p378)

-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동법률 제2조 제3호
 ㉢ 동법률 제7조 제1항
 ㉣ 동법률 제4조

19.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929·931·932·933, 객 p962, 토탈 p312)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

- 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보안관찰법 제3조
㉡ 동법 제5조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8조 제4항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기 p1001, 객 p1010, 토탈 p340)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
-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해설
설문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상호주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 원칙(범죄인인도법)]

상호주의 (제4조)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제6조)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특정성 원칙 (제10조)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제9조)	①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 ② 대륙법 채택, 영미법 채택 없음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제8조)	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범죄에의 해당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있음 ② 국가원수암살범,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인종차

	별, 야만·약탈행위 등은 예외 ※ 가해조항 :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도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살해한 자는 정치범으로 인정하지 않음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① 군사범죄(탈영, 항명 등)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①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범죄만 인도
유용성의 원칙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 ② 시효완성, 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